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 ①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은 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개정 2017.09.25>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3.>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대입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영향평가 시기)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별 고사 종료 후부터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반영 및 처리)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대입전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영향 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보칙) 공교육정상화법제16조에 따라 본교의 예·체능계열 학부(과)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정 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15-3-3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운영규정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